

[별표 9의3] <신설 2004.8.4, 2006.10.4>

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(제28조의4관련)

1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.
2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·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.
3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·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(시험일지, 검체사용량,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·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4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, 검사결과의 신뢰성·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.
5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가. 업소명 및 소재지
 - 나.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
 - 다. 의뢰 또는 접수번호
 - 라.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
 - 마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
 - 바. 검사기준·규격 및 결과(검사수치 등), 적·부 여부의 판정
 - 사. 검사기관명
6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당해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7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8.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시험·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가.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것
 - 나.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·조제하여 검사하는 것
 - 다.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하는 것
 - 라.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

- 마.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
- 바. 공시험(Blind test)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
- 사.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하는 것
- 아.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(Peak)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
- 자. 그 밖에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